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삼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745
----------	-------

발의연월일 : 2025. 12. 30.

발 의 자 : 서삼석 · 윤준병 · 이병진
주철현 · 임호선 · 어기구
문금주 · 이원택 · 임미애
송옥주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과 관련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 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거나, 형벌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보충성·비례성 등의 원칙에 따라 형량을 조정하거나 피해자 구제를 위해 손해배상 책임을 도입하는 한편,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도록 하고, 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형사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의 설치·보수·조사·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 서비스 설비

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시물을 훼손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등).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을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중 “토지등에의”를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제29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벌칙) ①·② (생략)	제29조(벌칙)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u>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u>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u> ----- ----- -----.
1. <u>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기술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한 자</u>	<삭 제>
2. <u>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또는 측량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u>	<삭 제>
④ <u>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u>	<삭 제>

제31조(과태료) ①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토지등에의 출입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② (생 략)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31조(과태료) ①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의 설치, 보수, 조사, 측량 또는 이를 위한 토지등에의-----

-----.

②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설비를 손상하거나 해당 설비의 표지물을 훼손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